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3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금지된 인공지능 정의 및 규제〉

■ 이훈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22호)

2026. 2.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2
1. 금지된 인공지능 정의 및 규제(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2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이훈기의원 등 13인

나. 발 의 일 : 2025. 12. 17.

다.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월 22일 시행예정인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은 인공지능 발전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율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인공지능기술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이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한 상황임. 최근 국내에서도 공개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의 개발에 대해 논란이 있어 규제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임.

이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을 정의하고, 그 개발·제공·이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공익상 불가피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의2, 제29조의2 및 제42조제1항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금지된 인공지능 정의 및 규제(안 제2조제4호의2 신설 등)

가. 개정안 요지

-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개발·이용이 금지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금지된 인공지능”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의2).
-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심리·사고·행동을 현저하게 왜곡하거나, 직장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예측하여 특정인의 평가·채용·징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제1호)
- 도로, 광장, 공원, 공연장, 전시장 등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제2호)
- 생체인식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를 추론하여 사람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시스템(제3호)
-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 없이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여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인공지능시스템(제4호)
-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신뢰도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특정인의 권리·의무 또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제5호)

-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무기를 운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제6호)
 -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 또는 예측하는 인공지능시스템(제7호)
 - 그 밖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제8호)
- 누구든지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승인할 수 있음(안 제29조의2)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실종자, 납치 피해자 또는 재난 피해자 등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확인, 국내대리인지정 및 사실조사 규정에 금지된 인공지능 추가(안 제22조, 제36조 및 제40조)
-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대상임(안 제42조의2)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침해할 현저한 우려가 있어 개발·이용이 금지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u> <u>가.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쳐 심리·사고·행동을 현저하게 왜곡하거나, 직장 또는 교육기관 등에서 사람의 감정을 인식·예측하여 특정인의 평가·채용·징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u>

현행	개정안
	<u>시스템. 다만, 의료 또는 안전을 목적으로 개발·이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u> <u>나. 도로, 광장, 공원, 공연장, 전시장 등 공중이 출입할 수 있는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생체인식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인공지능시스템</u> <u>다. 생체인식정보를 기반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민감정보를 추론하여 사람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인공지능시스템</u> <u>라. 법률에 따른 정당한 권한 없이 얼굴 이미지를 수집하여 생체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인공지능시스템</u> <u>마. 사람의 사회적 행동이나 개인적·직업적 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회적 신뢰도 점수를 산출함으로써 특정인의 권리·의무</u>

현행	개정안
	<u>또는 공공서비스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인공지능시스템</u> <u>바.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표적을 선정하고 무기를 운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u> <u>사. 인적 개입에 의한 조치 없이 사람에 대해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을 평가 또는 예측하는 인공지능시스템.</u> <u>아. 그 밖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지능시스템</u>
5. ~ 11. (생략)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9. (생략) 10. 고영향 인공지능 <u>규율</u>에 관한 사항	5. ~ 11.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 ----- -----. 1. ~ 9. (현행과 같음) 10. -----<u>및 금지된 인공지능 규율</u>에-----

현행	개정안
11. 고영향 인공지능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양상과 정책적 대응에 관한 사항 <u><신설></u> 12. · 13. (생략) ② · ③ (생략) <u><신설></u>	11. -----인공지능 및 금지된 인공지능과----- ----- ----- 11의2. 제29조의2제2항에 따른 금지된 인공지능 예외적 승인에 관한 사항 12. · 1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금지된 인공지능의 이용 제한 등) ① 누구든지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제공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에서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실종자, 납치 피해자 또는 재난 피해자 등 사람의 생명

현행	개정안
	· 신체에 대한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 3.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른 테러활동에 필요한 경우 4.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의 혐의가 있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위하여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금지되는 인공지능의 개발·제공 또는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의 확인)	제33조(고영향 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의 확인) ① --- ----- ----- -----
① 인공지능사업자는 인공지능 또는 이를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	

현행	개정안
하는지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고영향 <u>인공지능</u>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고영향 인공지능 <u>해당</u>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관련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고영향 <u>인공지능</u>의 기준과 예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④ (생략)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인공지능사업자로서 이용자 수,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	-----<u>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u>----- ----- ----- -----<u>인공지능 또는 금지된 인공지능</u>----- ----- -. ② ----- ----- -----<u>또는 금지된 인공지능 해당</u>----- ----- ----- -----. ③ ----- -----<u>인공지능 및 금지된 인공지능</u>----- ----- -----. ④ (현행과 같음) 제36조(국내대리인 지정) ① ---- ----- ----- -----

현행	개정안
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서면으로 지정하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33조제1항에 따른 고영향 인공지능 <u>해당</u> 여부 확인의 요청 3. (생략) ② · ③ (생략)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공지능사업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1. <u>제31조제2항</u> · 제3항, 제32조제1항 · 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위반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2. <u>제31조제2항</u> · 제3항, 제32조	----- ----- ----- ----- ----- -----. 1. (현행과 같음) 2. ----- -----<u>및 금지된 인공지능</u> <u>해당</u>----- 3.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40조(사실조사 등) ① ----- ----- ----- ----- ----- ----- -----. 1. <u>제29조의2제1항</u>, <u>제31조제2항</u>----- ----- ----- ----- 2. <u>제29조의2제1항</u>, <u>제31조제2</u>

현행	개정안
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의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항----- ----- ----- -----
②·③(생략) <u><신설></u>	②·③(현행과 같음) <u>제42조의2(벌칙) 제2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지된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운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u>
<u><신설></u>	<u>제42조의3(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2조의2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다. 검토사항

- 현행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을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규정¹⁾하고 강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특정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지는 않음.
- 한편, 우리나라보다 먼저 인공지능 관련 사항을 법제화한 유럽연합의 EU Artificial Intelligence Act(이하 “EU 인공지능법”)은 금지되는 인공지능 관행(Prohibited AI Practices)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인간의 행동 왜곡·조작 또는 취약점 악용, 사회적 점수 제공, 자료수집 및 평가 기반 개인 범죄 예측, 안면 인식 목적의 임의적 얼굴 이미지 수집 등 8가지를 규정하고 있음.

EU 인공지능법상 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규정(Article 5)²⁾

제II장 금지된 관행

제5조(금지된 인공지능 관행)

1. 다음과 같은 인공지능 관행은 금지된다.

(a) 개인이나 집단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눈에 띄게 침해하여 해당 개인이나 집단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하고 그에 따라 개인이 해당 개인, 다른 개인 또는 집단에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합리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결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결정을 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의 의식을 초월한 잠재의식에 영향을 미치는 기술 또는 조작이나 기만을 위한 기술을 사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 출시, 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

1)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고영향 인공지능”이란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역에서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이하 생략)

(b) 개인이나 다른 사람에게 상당한 피해를 유발하거나 합리적으로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방식으로 자연인 또는 특정 집단의 행동을 실질적으로 왜곡할 목적으로 해당인이나 집단의 연령, 장애나 특정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상황으로 인한 취약성을 악용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 출시, 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

(c) 다음 중 어느 하나 또는 모두를 초래하는 사회적 점수를 통하여 자연인이나 집단의 사회적 행동 또는 알려지거나 추론되거나 예상되는 성격이나 특성에 기초하여 특정한 기간 동안 자연인이나 집단을 평가하거나 분류하기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 출시, 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

(i) 데이터가 최초로 생성되거나 수집된 상황과 관계가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특정한 자연인 또는 집단에 유해하거나 불리한 처우

(ii) 특정한 자연인 또는 전체 집단의 사회적 행동이나 그 심각성에 비하여 부당하거나 불균형한 해당 자연인 또는 전체 집단에 유해하거나 불리한 처우

(d) 자연인의 자료수집분석 또는 그 성격 및 특징에 대한 평가만에 기초하여 자연인이 범죄를 저지를 위험을 평가하거나 예상하기 위하여 자연인의 위험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 출시, 특정 목적을 위한 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 이 금지는 범죄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객관적이고 검증 가능한 사실에 기초한 사람의 범죄활동 연루에 대한 인간의 평가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된 인공지능시스템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e) 인터넷이나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의 얼굴 이미지를 임의로 수집하여 안면 인식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하거나 확장하는 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 출시, 특정 목적을 위한 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

(f) 의료 또는 안전상의 이유로 시장에 인공지능시스템을 사용하거나 시장에 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직장 및 교육기관에서 자연인의 감정을 추론하기 위한 인공지능시스템의 시장 출시, 특정 목적을 위한 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

(g) 인종, 정치적 의견, 노동조합 가입, 종교적 또는 철학적 신념, 성생활 또는 성적지향을 추론하기 위하여 생체인식데이터를 기반으로 자연인을 개별적으로 분류하는 생체인식분류시스템의 시장 출시, 특정 목적을 위한 서비스 제공 또는 사용. 이 금지사항은 법집행 분야에서의 생체인식데이터 또는 생체인식데이터 분류에 기반한 이미지 등 적법하게 취득한 생체인식데이터의 라벨링 또는 필터링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h) 법집행을 목적으로 하는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의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 사용. 다만 그 사용이 다음의 목적 중 어느 하나에 엄격하게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i) 특정한 유괴, 인신매매 또는 성 착취 피해자의 표적 수색과 실종자 수색

(ii) 자연인의 생명이나 신체적 안전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임박한 위협 또는 진정하고 현존하거나 진정하고 예측 가능한 테러공격 위협의 방지

(iii) 부속서 II에서 규정하고 관련 회원국에서 4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구금명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는 범죄에 대한 수사 또는 기소나 형사처벌의 집행을 목적으로 용의자나 범죄자의 소재 파악 또는 식별

이 항 제(h)호의 규정은 법집행 이외의 목적을 위한 생체인식데이터의 처리와 관련하여 규정(EU) 제2016/679호 제9조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2. 제(1)항제1문단(h)에 언급된 대상 중 어느 하나에 대하여 법집행을 목적으로 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 있는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의 사용은 구체적으로 대상이 된 개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서만 같은 호에서 정한 목적으로 배포하고 다음의 요소를 고려한다.

(a) 사용 가능성을 유발하는 상황의 성질 특히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 초래될 피해의 심각성, 확률 및 규모

(b) 관련된 모든 자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해당 시스템의 사용 결과 특히 해당 결과의 심각성, 확률 및 규모

또한 이 조 제(1)항제1문단(h)에서 규정하는 목적 중 어느 하나에 대한 법집행을 목적으로 한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의 사용은 특히 시간적, 지리적 및 개인적 제한과 관련하여 그 사용을 승인하는 국내법에 따라 사용과 관련된 필요하고 비례적인 안전장치 및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의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 사용은 법집행기관이 제27조에 언급된 기본권 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제49조에 따른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시스템을 등록한 경우에만 승인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유럽연합 데이터베이스 등록하지 아니하고 해당 시스템의 사용을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등록을 완료한다.

3. 제(1)항제1문단(h) 및 제(2)항의 목적상 법집행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을 사용하려면 합리적이 요청이 있는 때에 제(5)항에서 정하는 국내법의 상세규칙에 따른 사법당국 또는 독립적 행정당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결정은 해당 시스템이 사용되는 회원국을 구속한다. 다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승인 없이 해당 시스템의 사용을 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늦어도 24시간 이내에 부당한 지체 없이 승인을 요청한다. 승인이 거절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을 중지하고 모든 데이터와 해당 사용의 결과 및 산출물을 폐기 및 삭제한다.

그 결정이 구속력을 갖는 관할 사법당국 또는 독립적 행정당국은 제출된 객관적 증거 또는 명확한 지표에 기초하여 관련된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이 제(1)항제1문단(h)에서 규정하는 목적 중 어느 하나를 달성하는 데 필요하고 비례적이며 해당 요청에서 확인되고 특히 기간과 지리적 및 개인적 범위에 관하여 엄격하게 필요한 것으로 제한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승인을 하여야 한다. 요청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 기관은 제(2)항에 언급된 요소를 고려한다. 사람에게 부정적인 법적 효력을 미치는 결정은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의 산출물만을 근거로 할 수 없다.

4. 제(3)항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법집행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을 사용하려면 제(5)항에 언급된 국내 규칙에 따라 관련 시장감시기관 및 국가데이터보호기관에 통지한다. 이 통지에는 최소한 제(6)항에 따라 규정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민감한 운용정보를 포함해서는 아니 된다.

5. 회원국은 한계 내에서 제(1)항제1문단(h), 제(2)항 및 제(3)항에 언급된 조건에 따라 법집행을 목적으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을 전부 또는 일부 승인할 가능성을 규정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관련 회원국은 그 국내법에서 해당 요청, 제(3)항에 언급된 승인의 부여 및 실행과 해당 승인에 관한 감독 및 보고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규칙을 정한다. 이 규칙은 또한 제(1)항제1문단(h)(iii)에 언급된 범죄를 포함한 같은 항 제(h)호에 언급된 목적과 관련하여 관할기관이 법집행을 목적으로 해당 시스템을 사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회원국은 채택 후 늦어도 30일 이내에 해당 규칙을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통지한다. 회원국은 유럽연합 법령에 따라 원격생체식별시스템의 사용에 관한 보다 엄격한 법률을 도입할 수 있다.

6. 제(4)항에 따른 법집행을 목적으로 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의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 사용을 통지받은 회원국의 국가 시장감시기관 및 국가 데이터보호기관은 그 사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유럽연합집행위원회에 제출한다. 이 목적을 위하여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그 결정이 제(3)항에 따른 승인 요청 및 그 결과에 대한 구속력을 갖는 관할 사법당국 또는 독립적 행정당국이 한 결정의 횟수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서식을 회원국과 국가 시장감시기관 및 데이터보호기관에 제공한다.

7. 유럽연합집행위원회는 제(6)항에서 규정하는 연례보고서를 기초로 회원국에서 집계된 데이터에 기반하여 법집행을 목적으로 한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한 공간에서의 '실시간' 원격생체식별시스템 사용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공표한다.

8. 이 조는 인공지능 관행이 다른 유럽연합 법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금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자료 :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포털

○ 인공지능 기술의 고도화·확산에 따라 생명·신체의 안전, 사생활의 비밀, 차별 금지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사례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정한 범주의 인공지능을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 제기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금지된 인공지능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만 개발·제공 또는 이용을 허용하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금지된 인공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고 국내대리인의 업무에 그 확인 요청을 추가하며 사실조사의 대상에도 포함하는 등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2) EU인공지능기본법 원문은 참고자료 참조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라오는 기본권 침해의 위험성이라는 한계를 최소화하고 인공지능 발전과 국민의 기본권 보호 간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인공지능기본법은 지난 1월 22일에 처음 시행된 만큼 아직 시행 초기 단계에 있어 법 시행 경과와 제도 운영 성과에 대해 충분한 평가를 하기 위한 시간이 확보되지 못하였음.
- 제정 당시에도 인공지능 기술 발전의 불확실성과 산업·기술 환경 변화의 속도를 고려하여 직접적인 금지나 강한 제재 수단의 도입은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바 있다는 점³⁾을 고려할 때,

고영향 인공지능에 대한 규제의 효과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고 나서 그 외에 추가로 금지 수준에 이르는 규제가 필요할 것인지 논의하는 것이 적절해 보임.
- 또한, 최근 인공지능 분야의 국제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미국·중국 등 주요 국가도 채택하지 않은 강력한 사전적 금지 규제를 국내에 선제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확보 및 혁신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을 위한 논의 당시에 금지된 인공지능 규정은 EU를 제외한 미국·영국·일본 등 주요국에서도 아직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단계로, 인공지능산업 발전 단계 및 국제 논의 동향과 발맞추어 반영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에 따른 규제 사항은 산업과 기술 발전을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는 균형 잡힌 규제를 위해 입법 과정에서 도출한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에 따른 금지된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일부 포섭하여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으로도 제재가 가능한 상황인바,

일부 인공지능의 개발·제공·이용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를 위반하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수준으로 제재를 추가·강화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당초 인공지능기본법의 제정 취지, 글로벌 인공지능 규제 동향,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개정안에 따른 금지된 인공지능의 개념이 현행 인공지능기본법의 고영향 인공지능과 일부 중복될 소지가 있고 표현이 명확하지 않아 수범자 입장에서 예측가능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고, 결과적으로 해외사업자보다는 국내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 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함.

문 의 처
02)6788-5230